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종교단체 대표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 <u>22시 운영시간 제한</u> ◦ 대상시설(5종)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간 21시→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u>2022.4.1. 시행</u>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3.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와 관련,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 확인 여부에 따라 종교활동 참여가능 인원이 변경될 수 있는 바, 출입명부는 모두 지체없이 파기하되, 수용 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원하는 각 종교시설에서는 접종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증명서(QR, Coov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2022.2.7.(월)~2022.2.25.(금)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공문)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김해강 행정사무관 차혜란 종무1담당관 전결 2022.2.21. 강성태

협조자

시행 종무1담당관-587 (2022. 2. 21.)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 / http://mcst.go.kr

전화번호 044-203-2328 팩스번호 044-203-3462 / mostovoi10@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